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5년 5월 18일

나. 제 안 자 :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 2005년 5월 18일

라. 상정일자 : 2005년 5월 25일

제1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김 경 배

나.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조례 제2조, 제7조, 제8조)
 -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차등화(붙임)
 -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회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삭제

○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제9조)

-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세제곱센치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서 삭제
-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품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서 삭제

○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제14조)

-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

○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제15조)

-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100만원에서 월50만원 (신고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한 전국 포상금 합계)으로 조정

○ 기타사항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개정

라. 참고사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정 석 광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변경에 따른 일부사항 개정과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